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 (권리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가입자 (이 협정서에서 "가입"라 합니다)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종료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반 신탁재산평가액에 자산관리수수료를 곱한 일반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지급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 등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일반 신탁자산평가액 | 수수료율 (연) |
|------------|----------|
| 전 구간       |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제도시행 경과연수    | 할인율 |
|--------------|-----|
| 2차년도부터 4차년도  | 10% |
| 5차년도부터 10차년도 | 15% |
| 11차년도 이후     | 20% |

-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가(지급)가 있는 경우 대가(지급)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가(지급)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100 이내의 신탁재산에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 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자사에 따릅니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 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경우 면제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 대비 개인부담금평가액의 비중(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합계만큼 면제합니다.
  - 가입자가 회사에 연금개시신청 후 최초 연금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당사 주소

회사명

영업점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 (권리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시행일부터 계산하는 수수료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부속협정서

가입자 (이 협정서에서 "가입"라 합니다)과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2조 (수수료의 징수)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는 매년 계약종료일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반 신탁재산평가액에 자산관리수수료를 곱한 일반 자산관리수수료의 합계로 하며, 해당 계산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지급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 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최종연금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 등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반 신탁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일반 신탁자산평가액 | 수수료율 (연) |
|------------|----------|
| 전 구간       |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제도시행 경과연수    | 할인율 |
|--------------|-----|
| 2차년도부터 4차년도  | 10% |
| 5차년도부터 10차년도 | 15% |
| 11차년도 이후     | 20% |

-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100 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 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자사에 따릅니다.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 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가입자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이 경우 면제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일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 대비 개인부담금평가액의 비중(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합계만큼 면제합니다.
  - 가입자가 회사에 연금개시신청 후 최초 연금을 수령한 날부터 제1항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20% 할인하여 적용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서명)

당사 주소

회사명

영업점